

2024학년도 1학기 문헌연구보고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문제 및 해결방안 연구

이름	오유진
전공	시각디자인
학번	20241573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문제 및 해결방안 연구

시각디자인학과 20241573 오유진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생성형 AI와 이미지 생성
2.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원리

III.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문제의 현황 및 심각성과 원인

1. 문제의 현황 및 심각성
2. 문제의 원인

IV. 해결방안

1.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학습 시 활용한 자료들의 정보 요약 및 출처 표기 의무 관련 법률
2.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학습 시 수집한 학습 데이터의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을 의무 관련 법률
3.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 법률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2021년 영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4개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가공한 선팅 필름을 부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이 발생했다.¹ 뒤이어 2024년 중국에서는 중국 내 울트라맨

¹ 한국저작권위원회(2023.12.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미술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

관련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A 회사가 B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울트라맨 티가 멀티타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²

두 사건의 공통점은 상대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이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사건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주체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건에서 그 주체는 AI다. AI의 저작권 침해 사례는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중국에는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이라는 관련 법적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³

한국에는 아직 해당 법적 규제가 확립되지 않았는데,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가 조직되어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나 법 제정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 고민이 많다고 한다.⁴

앞선 중국의 사례는 법률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줌과 동시에 AI의 발전과 함께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법적 규제가 미비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문제 관련 법적 규제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 연구해 보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성형 AI와 AI 이미지 생성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인간의 창작활동 결과물만큼의 정교한 텍스트, 이미지 콘텐츠 등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표적으로 Open AI의 Dall-,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다.⁵

또한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AI 이미지 생성(AI Image Generation)은 알고리즘이 이미지

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2524&pageIndex=1¬iceYn=&brdclasscodeList=&etc2=&etc1=&searchText=미술
&searchkeyword=&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SUBJECT&nationcode=#(2024.5.28).

² 한국저작권위원회(2024.3.11),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된 울트라맨 이미지 저작권 침해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2726>(2024.5.28).

³ 위와 같음.

⁴ 하현종 외 5명(2022.9.8),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 1등해서 난리난 미술계 근황 / 스브스뉴스>, YouTube/스브스뉴스 SUBUSUNNEWS, <https://youtu.be/thSXGOkcGGg?si=g1BnVezHZ5ArGfMC&t=289>(2024.5.28).

⁵ 전우림 외 4명(2024),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한 한국화 이미지 구현 서비스의 가능성 연구」, 『PROCEEDINGS OF HCI KOREA 2024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HCI학회, 503쪽.

를 자동으로 생성, 수정하는 기술로써 현재 각종 디자인 작업, 게임 그래픽, 영화 제작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는 중이다.⁶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다.

2.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원리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에는 5 가지의 중요 딥러닝 모델이 존재하는데, 각각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Diffusion, Transformer, Vision Transformer, CLIP(Contrastive Language-Image Pre-training)이다.⁷

GAN은 2014년에 제안된 딥러닝 학습법으로 '적대적 신경망'을 활용한다.⁸ 신경망은 생성기와 판별기로 구성되어 각각 실제 데이터와 매우 유사한 가짜 데이터를 만들고, 실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구별하는 식으로 경쟁하며 학습한다.⁹

Diffusion은 DDPM의 기초가 되는 모델로, 확률과 확산과정에 기반을 뒀서 학습용 이미지에 노이즈를 넣어 아무 특징 없는 노이즈로 만들었다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과정을 학습한다.¹⁰ 스테이블 디퓨전의 이름이 여기서 유래했으며 이후 U-Net, VAE 모델을 더한 DDPM(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로 발전했다.¹¹

Transformer는 챗GPT의 핵심 모델로 데이터를 높은 수준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해당 이름이 붙여졌으나, 대량의 학습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번거로움이 있다.¹² Vision Transformer 모델은 앞선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미지 학습 방식에 적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¹³

이미지를 만드는 딥러닝 모델인 DDPM과 달리 텍스트 명령을 이해하여 맞는 이미지를 추론하는 CLIP(Contrastive Language-Image Pre-training) 모델은,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에 입력한 프롬프트를 합당한 이미지로 추론하여 DDPM에서 만들도록 한다.

⁶ Ai망고(2023.8.15), 「쉽게 이해하는 AI 이미지 생성, 원리와 5개 적용 분야」, Ai 망고 홈페이지, https://ai-mango.com/ai-이미지-생성-설명/#Ai_이미지_생성의_기본_원리(2024.6.17).

⁷ 문창현·권동현(2023), 「이미지 생성형 AI에 대한 사용자 수준의 이해와 애니메이션 제작 교육 적용 방안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통권-72,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28~230쪽.

⁸ 문창현·권동현(2023), 위의 논문, 228쪽.

⁹ Ai망고(2023.8.15), 앞의 글, https://ai-mango.com/ai-이미지-생성-설명/#Ai_이미지_생성의_기본_원리.

¹⁰ 문창현·권동현(2023), 위의 논문, 228쪽.

¹¹ 문창현·권동현(2023), 위의 논문, 228~229쪽.

¹² 문창현·권동현(2023), 위의 논문, 229쪽.

¹³ 문창현·권동현(2023), 위의 논문, 230쪽.

III.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문제의 현황 및 심각성과 원인

1. 문제의 현황 및 심각성

앞서 설명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 점차 상용화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23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X)에서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인 'SUKJA(이하 트위터 닉네임 스즈, 아이디 @SUKJA_0)' 작가는 정하리 작가의 작품인 '폭군이 집착하는 엑스트라'의 표지가 본인의 그림체가 무단 학습된 AI 표지임을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했다.¹⁴ 해당 사건은 출판사 측에서 AI 표지를 내리고 정하리 작가와 출판사가 해명문을 올리면서 일단락되었다.

SUKJA 작가의 피해 사례 말고도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는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은 작화 일부에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통한 그림을 활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웹툰 작가들의 반발을 샀고 이는 곧 [그림 1]¹⁵처럼 네이버 웹툰 도전만화 카테고리에 AI 웹툰을 보이콧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움직임으로 번졌다.¹⁶

[그림 1] 네이버 도전만화 카테고리에 업로드 된 작가들의 AI 그림 보이콧



자료: 허진(2023.7.9), 「[단독]AI 웹툰' 창작인가 아닌가...지재권 가이드라인 만든다」,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29S2CUT239#cb>(2024.5.28).

또한 웹소설 '이별해 주세요, 제발!'의 출판사 측에서 그림 작가를 고용하여 마련한 표지를 해당 웹소설의 작가인 우수빈 작가가 거절한 뒤 이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표지 및 20장의 삽화를 제작했고, 표지는 실제로 웹소설 런칭 후 표지로 올린 탓에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다.¹⁷

¹⁴ @SUKJA_0(2023.6.25), 제목없음, 트위터(X), https://x.com/SUKJA_0/status/1672762980331835393(2024.6.18).

¹⁵ 허진(2023.7.9), 「[단독]AI 웹툰' 창작인가 아닌가...지재권 가이드라인 만든다」,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29S2CUT239#cb>(2024.5.28).

¹⁶ 위와 같음.

¹⁷ tory(2024.5.17), 이번에 난리난 시리즈 ai표지 삽화 소설 그림들(20장 스압), Dmitry,

할리우드 창작자 중 한 명인 카를라 오르티스는 “3년 안에 우리 직군은 사라질 것이다. 할리우드 예술가들은 매일 실존적인 위협을 느낀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나와 같은 창작자들의 작업을 어떤 동의도 없이 학습한 뒤 이를 토대로 우리의 작업을 복제하며 빠르게 성장한다.”¹⁸라고 말하며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오르티스는 2024년 새해에 미드저니가 공개한 그간 무단으로 학습한 예술가 4,700명의 명단에 서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분노했다고 한다.¹⁹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인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앞선 두 사례와 오르티스의 인터뷰를 보면 해당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작가들이 보이콧까지 하는 상황에서 왜 문제들은 계속 반복되며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사건을 관리, 처리해 줄 수 있는 딱 맞는 법안, 규제, 제도 등이 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이다.

2. 문제의 원인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상용화와 함께 증가한 문제들의 원인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다룬 법안, 규제, 제도 등의 미비 혹은 부재이다. 현재 대만,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전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관련 기구를 조직하거나 이미 법률을 제정했다. 한국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가 조직되긴 했으나 법률 제정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있어서 그림체는 본인의 자산이다. 그림 시장에서 본인의 작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특징 중 하나다. 그러한 자산이 단순히 AI가 학습할 이미지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특정한 작가의 그림체를 모방한 AI 이미지를 상업 작품에 활용함으로써 앞선 오르티스의 인터뷰처럼 그림체의 주인인 작가 본인이 설 자리를 위협받기까지 하고 있다. “한 학생이 인턴십을 하기로 한 게임 회사에선 생성형 AI의 여파로 직원의 90%를 해고하고 인턴십도 취소했다.”²⁰라는 예술 감독 셰이 사츠의 인터뷰가 이러한 현황에 힘을 실어준다.

만약 이렇게 작가의 생업을 위협할 정도의 저작권 침해를 일으킨 주체가 사람이었다면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현재 타인의 작품을 표절, 도용하여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는 등의 이익을 얻을 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²¹ 그러나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일으킨 주체는 AI다. 주체가 AI이며 관련 규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사례에서 그림 작가를 거절하고 대신 AI 표지와 삽화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작가의 자리를 위협하

[https://www.dmitory.com/issue/278784958\(2024.6.17\)](https://www.dmitory.com/issue/278784958(2024.6.17)).

¹⁸ 임지선(2024.2.13), 「[단독] “내 그림을, 나를 무단 학습한 AI를 고발한다”...할리우드의 봉기」,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28104.html\(2024.6.17\)](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28104.html(2024.6.17)).

¹⁹ 위와 같음.

²⁰ 위와 같음.

²¹ 조기현(2021.10.5), 「표절·도용 작품 수상 때 “형사처벌 가능”」, 문학뉴스, [http://www.munha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12\(2024.6.17\)](http://www.munha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12(2024.6.17)).

는 일을 그저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표지를 내리고 해명문만으로 끝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단속하는 법적 규제의 부재에 대한 심각성은 [그림 2]의 청원²²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그림 2] AI 학습시 사용되는 그림 저작권에 관한 청원



자료: 박**(2022.10.17), 「AI 학습시 사용되는 그림 저작권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44B3DE5B9565687E054B49691C1987F\(2024.6.18\)](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44B3DE5B9565687E054B49691C1987F(2024.6.18)).

IV. 해결방안

AI 관련 사업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아예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다. 한국보다 앞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관련 법적 규제 등을 확립한 해외의 사례 및 기존의 국내 법률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규제 관련 법률을 제시하였다.

1.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학습 시 활용한 자료들의 정보 요약 및 출처 표기 의무 관련 법률

2023년 제정된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안(AI ACT)과 저작권법은 저작권과 관련한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의무 중 네 번째 사항에서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인공지능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템플릿(건본)에 따라 범용 AI 모델의 훈련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작성하여 일반공중에게 제공해야 한다.'²³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범용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

²² 박**(2022.10.17), 「AI 학습시 사용되는 그림 저작권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44B3DE5B9565687E054B49691C1987F\(2024.6.18\)](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44B3DE5B9565687E054B49691C1987F(2024.6.18)).

²³ 박희영(2024.1.4),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3-19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안(AI Act)과 저작권법 -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52561&pageIndex=2¬iceYn=&brdclasscodeList=&etc2=&etc1=&searchText=&searchkeyword=&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2024.6.8\)](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52561&pageIndex=2¬iceYn=&brdclasscodeList=&etc2=&etc1=&searchText=&searchkeyword=&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2024.6.8))

해 사용한 콘텐츠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작성하여 공개하라는 것이다.²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에 업로드된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미드저니에서 공개한 예술가 명단을 확인한 할리우드 창작자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도 이것이다. 아무 말 없이 학습 데이터로 가져가 놓고 뒤늦게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학습시킬 때 활용한 이미지와 같은 콘텐츠에 대한 정보 요약과 더불어 출처를 표기하는 것을 의무로 두는 법률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출처를 표기하는 것만 의무로 규정한다면 현재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들의 행태처럼 무단으로 가져간 뒤 출처만 표기하고 끝낼 수 있다. 이는 오히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관련자 측에서 출처를 표기했으니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학습 데이터 수집이 무단인 이상 창작자의 피해는 법률 규제 재정 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2.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학습 시 수집한 학습 데이터의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을 의무 관련 법률

출처를 표시한다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창작물을 학습 데이터로서 이용하는 것은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제자리걸음으로 만든다. 창작자는 본인의 창작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 때문에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학습 시 수집한 데이터의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을 의무 또한 법률로 지정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안(AI ACT)과 저작권법을 다룬 이슈리포트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해 언급한다. 해당 이슈리포트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관련 저작권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²⁵라고 명시하고 있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학습하기 전에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을 법률로써 의무로 규정한다면, 창작자 스스로 본인의 창작물이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게 되고 이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앞선 피해 사례와 같은 일들이 감소할 것이다.

3.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 법률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안한 법률은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었다면 이것은 이미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의 사후 조치를 위한 법률이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이는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²⁶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을 경우 저작재산권을 침

²⁴ 위와 같음.

²⁵ 위와 같음.

²⁶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 이용, 침해 및 규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6.jsp\(2024.6.17\)](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6.jsp(2024.6.17)).

해당한 창작자에게 해당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측에서 합당한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피해 보상으로는 국내 저작권법에서 명시한 대로 벌금, 즉 합당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든 작품을 더 이상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하지 않는 식의 이익 창출 제한 등이 있을 것이다.

V. 결론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산출물들을 내고 있고 이는 미술 등의 창작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AI 기술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엄청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AI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저작권 침해를 적절하게 규제할 법률 및 제도 등이 부재하거나 미비하다.

법적 규제의 부재 및 미비로 인해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체를 무단으로 학습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 만든 표지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인 웹툰의 작화 일부 또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했다가 작가들의 보이콧을 불러오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작가의 생업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할리우드의 창작자들이 이 사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루 빨리 적절한 법적 규제를 규정하지 않으면 이 또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규제 부재로 인한 문제점들과 세계 최초로 AI 관련 법률을 통해 AI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중국의 사례로 우리는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보다 앞서 AI 관련 법적 규제를 확립한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저작권법을 참고해서 다양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규제 관련 법률을 고안했다. 고안한 법률은 AI 이미지 생성 시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정보 및 출처 표기 의무 규정,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허락을 구할 의무 규정,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 관련 법률로 총 3가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에 아직 부재한 AI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규제에 의한 문제점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경각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미 법적 규제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이를 분석하고, 실제 관련 법적 규제를 제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법적 규제에 집중하다 보니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이미지 생성자나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윤리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 더욱 넓은 시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만들어낼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문창현·권동현(2023), 「이미지 생성형 AI에 대한 사용자 수준의 이해와 애니메이션 제작 교육 적용 방안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통권-72,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13~262쪽.

전우림 외 4명(2024),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한 한국화 이미지 구현 서비스의 가능성 연구」, 『PROCEEDINGS OF HCI KOREA 2024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HCI학회, 503~508쪽.

2. 인터넷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 이용, 침해 및 규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6.jsp\(2024.6.17\)](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6.jsp(2024.6.17)).

박희영(2024.1.4),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3-19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안(AI Act)과 저작권법 -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52561&pageIndex=2¬iceYn=&brdclasscodeList=&etc2=&etc1=&searchText=&searchkeyword=&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2024.6.8\)](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52561&pageIndex=2¬iceYn=&brdclasscodeList=&etc2=&etc1=&searchText=&searchkeyword=&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2024.6.8)).

박**(2022.10.17), 「AI 학습시 사용되는 그림 저작권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44B3DE5B9565687E054B49691C1987F\(2024.6.18\)](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44B3DE5B9565687E054B49691C1987F(2024.6.18)).

임지선(2024.2.13), 「[단독] “내 그림을, 나를 무단 학습한 AI를 고발한다”...할리우드의 봉기」,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28104.html\(2024.6.17\)](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28104.html(2024.6.17)).

조기현(2021.10.5), 「표절·도용 작품 수상 때 “형사처벌 가능”」, 문학뉴스, [http://www.munha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12\(2024.6.17\)](http://www.munha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12(2024.6.17)).

하현중 외 5명(2022.9.8),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 1등해서 난리난 미술계 근황 / 스프스뉴스>, YouTube/스프스뉴스 SUBSUNNEWS, [https://youtu.be/thxXGOkcGGg?si=g1BnVezHZ5ArGfMC&t=289\(2024.5.28\)](https://youtu.be/thxXGOkcGGg?si=g1BnVezHZ5ArGfMC&t=289(2024.5.28)).

한국저작권위원회(2024.3.11),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된 울트라맨 이미지 저작권 침해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52726\(2024.5.28\)](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52726(2024.5.28)).

한국저작권위원회(2023.12.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미술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52524&pageIndex=1¬iceYn=&brdclasscodeList=&etc2=&etc1=&searchText=미술&searchkeyword=&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SUBJECT&nationcode=#\(2024.5.28\)](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52524&pageIndex=1¬iceYn=&brdclasscodeList=&etc2=&etc1=&searchText=미술&searchkeyword=&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SUBJECT&nationcode=#(2024.5.28)).

허진(2023.7.9), 「[단독]AI 웹툰' 창작인가 아닌가...지재권 가이드라인 만든다」,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29S2CUT239#cb>(2024.5.28).

Ai망고(2023.8.15), 「쉽게 이해하는 AI 이미지 생성, 원리와 5개 적용 분야」, Ai 망고 홈페이지,
https://ai-mango.com/ai-이미지-생성-설명/#Ai_이미지_생성의_기본_원리(2024.6.17).

tory(2024.5.17), 이번에 난리난 시리즈 ai표지 삽화 소설 그림들(20장 스압), Dmitry,
<https://www.dmitory.com/issue/278784958>(2024.6.17).

@SUKJA_0(2023.6.25), 제목없음, 트위터(X),
https://x.com/SUKJA_0/status/1672762980331835393(2024.6.18).